울릉군 고시 제2016-35호
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,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07. 28.

울 릉 군 수

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,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어선의 승객이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그리고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영업시간) 영업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. (단, 야간 선상낚시에 한해서만 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야간

안전운항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운항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)

제4조(숭선정원) 낚시어선의 숭선정원은 「어선법」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숭선인원으로 한다.

제5조(영업구역의 제한)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군사시설보호법, 해상교통안전법, 원자력법, 항만법, 어항법,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
 - 2. 울릉도 본도를 기준으로 3마일 이상 해역
-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갯바위 및 간출암에 낚시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저동 어촌계지선 죽도 뒤쪽 쌍굴주위
 - 2. 울릉군 북면 천부리 죽암 어촌계지선 일선암
 - 3. 울릉군 서면 태하리 태하 어촌계지선 대풍령 추평바위
-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을 승선시켜 안내할 수 있는 곳에 안내할 경우에는 그 낚시객이 낚시장소에서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기 전에 당해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(선주, 선원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상호 기록하여 비상시 연락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)하고, 기상악화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.

-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수면의 상황에 따라 낚시어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거나 멈출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 하여야 한다.
- ③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제4조에 따른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,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및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다른 시·도지사의 관할 구역 내에서 낚시객을 안내 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·군수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⑥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 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⑦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수가 고시하는 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 하여야 한다.
- ⑧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·유지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 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⑨ 충돌, 좌초 또는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① 출항 전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교육하여야 한다.

제7조(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) ① 선내에서 음주 행위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고, 신분증을 요구하면 지체없이제시하여야 한다.
 - ③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를 유지한다.
- ④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 금지, 인명구조 장비 및 낚시어선의 설비 등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⑤ 구명조끼 착용 및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⑥ 갯바위 등 낚시장소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중 기상 악화 시 낚시어선 업자(선장)의 안전대피 지시를 이행 해야 한다.
- ⑦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수산동·식물 포획·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 체장을 준수한다.
 - ⑧ 바다에 쓰레기 투기 및 해양·수질을 오염 시키는 행위를 금지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고시의 폐지)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 (울릉군 고시 제2015-006호)는 이를 폐지한다.